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훈령 발령(훈령 223호)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령을 발령하고자 합니다.

1. 발령 내역

연번	공포번호	자치법규명	주요내용	소관부서	비고
1	223	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	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“공무원 경고 등 처분제도”의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	감사담당관	훈령 (제정)

2. 발령 방법 : 구보 게재

3. 발령 일자 : 2016. 2. 5.(금). 끝.

